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46
----------	-----

2017. 7. 14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윤홍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7년 6월 26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7월 5일

(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윤홍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전문성,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임 규정을 마련하며,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는 정기회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(안 제3조 제1항)
-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, 교육행정 및 교육·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 2명, 도지사 2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함(안 제3조제2항제2호)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과 사임,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함(안 제4조)
- 정기회의 개최를 8월로 변경함(안 제7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청 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각 2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고,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8월로 변경한 것은,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교류와 소통의 공정성을 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,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3명”을 “1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”를 “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 중 “2년으로 한다”를 “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

제7조제2항 중 “9월”을 “8월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의		제3조(구성) ① -----		
장 2명을 포함한 <u>13명</u> 이내의		----- <u>14명</u> -----		
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		-----		
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		-----		
려하여 어느 한쪽 성(性)의 비율		-----		
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		-----		
하며,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		-----.		
의장이 된다.				
②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		② -----		
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		-----		
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		-----.		
위촉한다.				
1. (생 략)		1. (현행과 같음)		
2.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		2. -----		
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,		-----		
교육행정 및 교육·학예에 관		-----		
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		-----		
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<u>3명 이</u>		----- <u>각각 2명 이내로 추천</u>		
<u>내로 공동 추천한다.</u>		<u>한 사람으로 한다.</u>		
③ (생 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7조(회의 등) ① (생략)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임기) ① -----
-----, -----
-----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

제7조(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8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